

2026년 2월  
안전보건교육 교재

[산업안전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]



담당	검토	승인

## 안전보건교육 일지

일자 : 2026년 월 일

교육명칭	<input type="checkbox"/> 정기 안전보건 교육(반기 12시간 이상) <input type="checkbox"/>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(2시간) <input type="checkbox"/> 관리감독자 교육(년16시간)			<input type="checkbox"/> 채용시 교육(8시간) <input type="checkbox"/> 특별안전보건 교육(16시간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
	구분	계	남	여	비고
교육인원	대상인원				
	참석인원				
교육시간	시 분 - 시 분 ( 시간)				
교육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집합교육	<input type="checkbox"/> 위탁교육	<input type="checkbox"/> 실습교육	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교육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
교육장소	<input type="checkbox"/> 강의실	<input type="checkbox"/> 회의실	<input type="checkbox"/> 식당	<input type="checkbox"/> 작업장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
교육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강의식	<input type="checkbox"/> 시청각	<input type="checkbox"/> 현장교육	<input type="checkbox"/> 현장실습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
교육주제	산업안전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				
교육내용	1. 산업안전보건법이 뭐예요? 2. 회사의 역할과 근로자의 역할 3. 안전보건교육이란? 4. 기계,설비 사용시 주의 5.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6. 안전수칙을 안지키면?				
강사명	소속 및 직위			비고	

## 교육참석자 명단 (2026. . . )

순번	이 름	서 명	순번	이 름	서 명
1			31		
2			32		
3			33		
4			34		
5			35		
6			36		
7			37		
8			38		
9			39		
10			40		
11			41		
12			42		
13			43		
14			44		
15			45		
16			46		
17			47		
18			48		
19			49		
20			50		
21			51		
22			52		
23			53		
24			54		
25			55		
26			56		
27			57		
28			58		
29			59		
30			60		

##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

NO	산업안전보건법 조항	주 요 내 용	별 칙
1	제16조[관리감독자]	▷ 기계기구 또는 설비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,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·착용·사용교육, 산업재해보고·응급조치,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확인, 위험성평가등 업무수행	1차 300만원 과태료
2	제17조[안전관리자] 제18조[보건관리자] 제19조[안전관리담당자]	▷ 상시 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별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또는 대행기관에 위탁 ▷ 선임된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관련 업무수행	1차 500만원 과태료 1차 300만원 과태료
3	제29조[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] 제32조[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]	▷ 정기교육 : 비사무직(매반기 12시간), 사무직(매반기 6시간), 관리감독자(연간 16시간) ※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정기교육 50% 이상 실시 ▷ 채용 시 교육 : 건설일용근로자(4시간), 건설 외(일용근로자 1시간, 외 8시간 이상) ▷ 특별교육 : 건설일용직(2시간 이상), 건설업 이외(16시간 이상) ▷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: 일용근로자(1시간), 일용근로자 외(2시간) ▷ 안전보건관리책임자(2년마다 6시간), 안전·보건관리자(34(신규), 2년마다 24(보수)시간) ▷ 안전보건관리담당자(최초 양성교육 16시간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8시간 보수교육 실시)	1차 10만원 과태료 1차 50만원 과태료 1차 10만원 과태료 1차 50만원 과태료 1차 10만원 과태료 1차 500만원 과태료 1차 100만원 과태료
4	제34조[법령 요지 등의 게시]	▷ 본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	1차 50만원 과태료
5	제36조[위험성평가의 실시]	▷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이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·보존하여야 함 (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)	1차 300만원 과태료
6	제37조[안전보건표지의 설치, 부착]	▷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·시설·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 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(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별표7,8,9 기준) · 금지표지(출입금지, 사용금지 등)/경고표지(인화성, 산화성, 독성 물질 등)	1차 10만원 과태료 (1개소 당)
7	제38조(안전조치)	▷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·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· 폭발성,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· 전기·열·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· 굴착·채석·하역·벌목·운송·조작·운반·해체·중량을 취급 그 밖의 불량한 작업방법 · 추락·붕괴,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, 천재지변 등	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8	제39조(보건조치)	▷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· 원재료·가스·증기·분진·흄·미스트·산소결핍·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· 방사선·유해광선·고온·저온·초음파·소음·진동·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·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·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· 계측감시·컴퓨터·단말기·조작·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·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· 활기·채광·조명·보온·방습·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등	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9	제54조[중대재해발생 사실] 제57조[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]	▷ 산재발생시 은폐해서는 안되며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· 사망 시 : 지체없이 관할 노동지청에 전화/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고 · 부상 시 : 3일 이상 휴무 시 관할 노동지청에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보고	미 보고 : 1차 3천만원 미 보고 : 1차 700만원
10	제63조[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]	▷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(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 지시 제외)	3년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
11	제64조[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]	▷ 안전보건협의체(1회/월), 건설업 및 제조업 순회점검(1회/2일) 합동점검(1회/2개월) 위생시설 설치 협조, 안전 및 보건 정보제공 등	500만원이하 벌금
12	제80조[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]	▷ 프레스, 전단기, 가스집합용접장치, 크레인, 승강기, 리프트, 용접기, 압력용기, 보일러 훌러기, 연삭기, 융재가공용 둥근틀, 동력식 수동대패, 산업용로봇 등은 방호장치 없이 사용 및 양도, 대여 금지	1년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13	제84조[안전인증] 제85조[안전인증 표시]	▷ 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, 리프트, 압력용기, 훌러기, 사출성형기, 고소작업대, 곤돌라 및 프레스 및 전단기, 양증기 과부하방지장치, 안전밸브, 파열판, 방폭구조제품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성능의 안전성을 위하여 안전인증기준을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함 ▷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·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 1차 100만원 과태료
14	제93조[안전점검]	▷ 크레인(2톤 이상), 리프트, 곤돌라, 압력용기, 프레스, 전단기, 국소배기장치(49종 50% 초과) 원심기, 화학설비와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, 훌러기, 사출성형기, 고소작업대, 컨베이어, 산업용로봇 등 설치 후 3년 최초 안전점검 실시, 이후 2년마다 안전점검 실시	1차 200만원 과태료 (1대 당)
15	제114조[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] 제115조[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등의 경고표시]	▷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, 수입, 운반, 저장시 작성·제공받은 MSDS 게시 또는 비치 ▷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해당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교육 ▷ 제공·사용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/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	1차 100만원 과태료 1차 50만원 과태료 1차 50만원 과태료
16	제118조[유해, 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]	▷ a-나프틸아민, 디아니시딘, 디클로로aze이딘 및 그염, 베릴륨, 벤조트리플로라이드,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, 염화비닐, 폴리로피치 휘발유 등(산안법 시행령 제88조)	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17	제119조[석면조사] 제122조[석면해체, 제거]	▷ 건축물 등 철거시 지정된 기관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함. ▷ 일정·면적 이상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시 석면해체 제거 업자를 통하여 해체해야 함.	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18	제125조[작업환경측정]	▷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화학적인자 114종, 금속류 24종, 산 알칼리류 17종, 가스상태물질류 15종, 영 제88조 허가대상유해물질12종, 물리적인자2종(소음 80dB 이상), 분진7종, 작업환경측정 실시(신규가동·변경 시 30일 이내, 이후 반기애 1회 이상 실시)	1차 20만원 과태료 (작업환경측정 대상 근로자 1명 당)
19	제129조[일반건강진단] 제130조[특수건강진단 등]	▷ 일반건강진단 : 사무직 1회/2년, 비사무직 1회/1년 ▷ 특수건강진단 : 소음, 화학물질, 분진 등 노출 근로자(1회/반기~2년) ▷ 배치전건강진단 :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채용, 작업전환시 작업전 실시	1차 10만원 과태료 (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 당)
20	제164조[서류의 보존]	▷ 산업재해 발생기록, 관리책임자, 안전 및 보건관리자, 관리감독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, 석면조사, 작업환경측정, 건강진단 등에 관한 서류 (3~30년 보관)	1차 30만원 과태료 (각 서류 당)

‘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’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알게 하여야 한다.